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0. 9. 8. (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 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검토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회부경위

- 제출자 : 이민석 의원 외 9인
- 제출일 : 2020. 9. 2.
- 회부일 : 2020. 9. 3. (의안번호 : 20-124)

2. 제출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안 제5조)
-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7조~안 제8조)
- 마. 사무의 위탁(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8. 28. ~ 2020. 9. 1.
- 2)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3)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4)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특이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인가구도 가정으로 정의됨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으로 공동체를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함께하도록 그 기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는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원 사업 내용, 안 제8조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해체 등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2019년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 가구수 대비 29.3%이며, 마포구의 1인가구 또한 36.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오피스텔 등 1인 주거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원가족과의 관계유지 소통 및 생활역량에 대한 건강한 독립가구로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하고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제고되어야 하는 바, 본 조례안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조례안 제정으로 마포구 거주 1인가구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적 가족도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1인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참여도 증진을 위한 집행부의 우수한 정책 발굴과 시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표] 마포구 1인가구 현황

연 도	전체 가구수	1인 가구수	1인가구 비율(%)	비고
2015	159,636	52,437	32.8	
2016	158,474	53,382	33.7	
2017	157,877	54,162	34.3	
2018	159,850	56,837	35.6	
2019	162,161	59,248	36.5	

※ 자료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5년~2019년)

[관계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6.>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2의2.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2020. 5. 19.>

부칙 <제17280호, 2020. 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7] [여성가족부령 제91호, 2016. 6. 7, 일부개정]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출산·자녀양육·가족부양·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소비·여가·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상담·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05. 6. 23., 2008. 3. 3., 2010. 3. 19.>

부칙 <제91호, 2016.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